

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

의안

번호

77

제출년월일 : 2003. 3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강원도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던 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아동복지법이 시·군 조례로 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가 폐지되었기에 속초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임무와 정수 관련 조항을 둠(안 제2조 및 제3조)
-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력 등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- 아동위원 회의시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아동복지법 제6조 (별첨 1)
- 입법예고(2002. 12. 9 - 2002. 12. 29) : 의견없음

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아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
2.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
3. 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
4. 아동학대 신고,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
5.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

제3조(아동위원 정수) 위원회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을 두되, 인구 2만명 이상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위·해촉)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
2.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②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 하다고 인정될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아동담당주사가 된다.

제7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아동위원 운영위원회) ①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 협조, 정보교환,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아동위원 운영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.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아동복지법 제6조 (아동위원)

- ①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 아동위원을 둔다.
-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
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
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
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
받을 수 있다.
-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
지급할 수 있다.
- ⑤아동위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군·구의
조례로 정한다.